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· 퇴거불응

[광주지방법원, 2009.5.28, 2009고단898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정경진

【주문】

】피고인 강신원을 징역 6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피고인 김종, 이정범, 김대연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